

## 운정연수원 운영규정

| 문서번호   | BSKS-3-1-63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  | 1997.07.01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2.04.15. |
| 페이지 수  | 1/3         |

1997.07.01.제정 2011.12.01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#### 제 1 장 총 칙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운정연수원(이하 '연수원'이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방침) 연수원은 "나라와 겨레의 발전에 이바지할 참된 일꾼을 기른다"는 학교법인 화신학원의 건학이념에 따라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수련시킴은 물론, 다양한 프로그램 의 개발과 시행을 통하여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를 이루는 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.
- 제3조(운영)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.) 및 학교법인 화신학원 산하 설치학교의 교직원, 재학생, 교직원 가족과 본교 유관 단체 관계자의 휴양과 연수 및 교육장으로서 운영하다.
- 제4조(조직 및 관리) 연수원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.
  - ① 연수원은 본 대학의 부속 기관으로 총장의 관리하 에 둔다.
  - ② 연수원의 관리 운영을 위해 연수원장과 관리인을 둘 수 있다.
  - ③ 연수원장과 관리인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이를 운영 감독한다.
- **제5조(수칙)** 연수원 사용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연수원장은 연수원 이용자 수칙을 따로 정한다.

## 제 2 장 연수원의 사용 신청과 허가

- 제6조(사용 절차) ①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수원 사용 신청서를 연수원 사용 7일 전에 본교 사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긴급 또는 예상하지 못한 주요 한 행사를 위한 사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 사용 신청을 받은 사무처 담당자는 시설을 배정하고 결 재를 득한 후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7조(사용 제한) 연수원의 시설 규모와 내역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나 질서 유지상 연수원의 사용 허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일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

## 운정연수원 운영규정

| 문서번호   | BSKS-3-1-63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  | 1997.07.01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2.04.15. |
| 페이지 수  | 2/3         |

제8조(사용 자격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원을 사용할 수 없다.

- 1. 법정 전염병의 이환자 및 보균자
- 2. 기타 총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자
- 제9조(사용료 납부) ① 연수원 사용자는 사용한 후 10일 이내에 청소 및 연수원 사용과 관련 하여 본교에서 정한 실비의 사용료(별첨)를 사무처에 납입 하여야 한다.
  - ② 사용 허가된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인원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입 하여야 한다.
  - ③ 연수원 사용 후 기물 파손이나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그 복구 및 수리비용일체를 같이 납입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용료 면제)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- 1. 본교와 연계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유관 단체 (산업체·관공서·학교 및 기타)
  - 2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
- 제11조(부대시설) 연수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다.
  - 1. 탐구당
  - 2. 취사장
  - 3. 운동장

## 제 3 장 재 정

- 제12조(재정 부담) ① 연수원의 기본 시설비, 기본 시설 보수비 및 직원의 보수는 본교에서 부담한다.
  - ② 연수원의 관리비 및 기타 경비는 별도의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본교에서 부담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교육부 전문81413-236(1998.05.07.)호에 의거 1998년 5월 8일부터 "부산경상전문 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"으로 한다.



# 운정연수원 운영규정

| 문서번호   | BSKS-3-1-63 |
|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정일자   | 1997.07.01. |
| 최종개정일자 | 2022.04.15. |
| 페이지 수  | 3/3         |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(법률 제9356호)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"학장"을 "총장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 교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